

■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
<p>제 1 장 총칙</p> <p>제 1 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</p> <p>(이하 생략-신청서와 함께 출력된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주시시오)</p> <p>본인은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한국전자인증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 항목</p> <p>- (필수항목) 이름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조회용번호, 신분증 사본 [자동생성정보](필수)접속 로그, 쿠키, 접속 IP 정보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 목적</p> <p>- 인증서 발급 및 관리</p> <p>-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</p> <p>-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안내 (갱신 안내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</p> <p>- 가입자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 년간 보관(인증서 신청 후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30 일간 보관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</p> <p>-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</p> <p>-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</p> <p>- 신분증 사본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(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유식별정보 수집 목적</p> <p>- 인증서 발급 시 본인 확인</p> <p>- 신분증 진위 확인</p> <p>- 인증서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모니터링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</p> <p>- 가입자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 년간 보관</p> <p>※ 수집 근거</p> <p>- 주민등록번호 :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2</p> <p>- 신분증 사본 : 전자서명법 제 14 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</p> <p>- 가입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본인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■ 개인정보 제 3 자에 대한 제공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</p> <p>- 정부 24(민원 24), 경찰청(교통민원 24), 하이코리아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</p> <p>- 가입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) 진위 여부 확인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</p> <p>- 정부 24(민원 24) : 가입자 주민등록증 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발급일자)</p> <p>- 경찰청(교통민원 24) : 가입자 운전면허증 정보(성명, 생년월일, 면허번호, 식별번호)</p> <p>- 하이코리아 : 가입자 외국인등록증 정보(외국인등록번호, 발급일자, 일련번호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</p> <p>- 전자민원 신청이력 3 년 보관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</p> <p>- 가입자는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인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본인은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한국전자인증원 인증서비스 이용약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 및 적용 범위)

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(이하 "전자서명관련법"이라 한다)과 한국전자인증주식회사(이하 "한국전자인증"이라 한다)의 인증업무준칙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"전자서명생성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2. "전자서명검증정보"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3. "인증"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4. "인증서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.
- 5. "등록대행기관"이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인증서비스 가입신청서의 접수/처리 및 신원확인 등 가입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.
- 6. "가입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.
- 7. "이용자"라 함은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자를 말한다.
- 8. "가입자 정보"라 함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/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부호/문자/음성/음향/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가입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- 9. 사고정보: 전자금융사고 또는 공동인증서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의 기기정보 및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)를 말한다.

제3조 (약관 명시 및 개정)

- ① 본 약관은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공지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한 가입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 일자 2주전에 이를 고지한다. 단,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한다.약관 변경의 고지는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할 수 있다.
- ③ 가입자가 변경된 약관을 고지된 후 2주 이내(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)에 서면 또는 전화, 전자메일의 수단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4조 (약관 외의 규정)
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서명관련법 및 전자서명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

제5조 (인증서비스의 종류 및 인증서신청 수수료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신규발급, 재발급, 갱신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 및 폐지 등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종류와 용도, 인증서신청 수수료 등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게시한다.
- ③ 제5조 2항의 인증서신청 수수료는 인증서비스 가입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이 무료발급을 명시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.

제6조 (인증서비스 가입신청)

- ① 인증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는 한국전자인증 또는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와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
-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될 경우,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- 1.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
- 2.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- 3. 제출된 서류만으로 가입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- 4. 납부할 인증서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하였거나 사고정보로 의심되는 경우
- 6.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
- ③ 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전자서명관련법에 근거하여 가입신청자의 신원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인증서 발급코드를 제공한다.
- ④ 가입신청자는 인증서 발급 내역을 숙지하여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코드를 입력 후 인증서를 발급받는다.
- ⑤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후 인증서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가능기간의 초과와 동시에 인증서 서비스 가입신청이 취소된다.

제7조 (인증서신청 수수료의 환불)

- ④ 가입신청자가 인증서를 발급가능기간 내에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급가능기간만료로부터 14일 이내,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발급신청을 하였던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발급의 취소를 신청하고, 인증서신청 수수료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전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, 한국전자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발급신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인증서의 효력 등

제8조 (인증서의 유효기간)

-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 게시한다.

제9조 (인증서의 이용범위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개인과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인증서를 발행하며, 공동인증서의 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(범용): 일반 전자상거래, 금융기관 업무, 정부전자조달/민원업무, 국제청 전자세금계산서/민원업무
- 2. 법인/단체/개인사업자(용도제한용): 전자계약 업무, 전자세금계산서 업무, 은행,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, 원산지 증명 업무, 조달 비록출자 업무
- 3. 개인(범용): 일반 전자상거래, 금융기관 업무, 정부 민원업무
- 4. 개인(용도제한용): 은행, 보험 및 신용카드 업무, 정부 민원업무, EMR 전자서명 업무, 내부 업무용
- 5. 서버(범용): 온라인상 서버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

제10조 (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)

- ① 한국전자인증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효력이 소멸된다.
- 1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- 2.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

제11조 (인증서의 효력정지 등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효력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,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다.
- ②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는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으면 그 효력을 회복한다.
- ③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효력을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<http://dir.crosscert.com>에 이를 공지한다.

제12조 (인증서의 폐지 등)

- ①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인증서를 폐지한다.
- 1.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
- 2. 가입자가 사기 기타 부정행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
- 3. 가입자의 인증서가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발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- 4. 가입자의 사망/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
- 5.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/훼손 또는 도난/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- 6.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에 대한 효력회복신청이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없는 경우
- 7.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출된 경우
- ② 한국전자인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<http://dir.crosscert.com>에 이를 공지한다.

제13조 (인증서비스의 정지 및 인증서의 이용제한 등)

- ①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- 1. 서비스용 설비 점검,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
- 2.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- 3.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4.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5.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13조 1항에 따라 인증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한국전자인증은 지체 없이 가입자에게 이를 고지한다.
- ③ 한국전자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일부 혹은 전부 제한할 수 있다.
- 1.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가입한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 또는 발급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
- 2.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
- 3.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4. 가입자가 부정행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이 인지한 경우
- 5.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
- 6. 한국전자인증이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절차나 한국전자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
- 7.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
- 8.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

- 9. 해킹, 명의도용 등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14조 (한국전자인증의 의무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/관리한다.
- ③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④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업무준칙의 제/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.

제15조 (가입자의 의무)

- ① 가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.
- ② 가입자는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실명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며,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③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/관리하고, 이를 분실/훼손 또는 도난/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한국전자인증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가입자 개인정보보호

제16조 (가입자 개인정보보호)

- ① 한국전자인증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접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한국전자인증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- ④ 한국전자인증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,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전자인증이 선정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,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 공지한다.
- ⑤ 가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"개인정보처리방침"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가입자가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인증서비스는 정지된다.

제 5 장 손해 배상

제17조 (손해배상)

한국전자인증이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0조(손해배상책임)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8조 (면책)

한국전자인증과 등록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1. 가입자 및 이용자가 용도에 합치하지 않은 인증서를 사용한 경우
- 2. 인증서비스 수행 중 한국전자인증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통신기초시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등록대행기관 외부의 통신기 및 통신회선의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
- 3.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
- 4.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관리 부주의(정보 노출, 분실, 변조 등)로 발생한 손해
- 5.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
- 6. 유효기간이 경과된 인증서의 이용에 따른 손해
- 7. 한국전자인증이 전자서명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기술적 또는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손해
- 8. 효력정지 및 폐지된 인증서의 이용에 따른 손해
- 9. 한국전자인증이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에 의한 가입자 및 이용자의 손해
- 10. 법적인 효력이 없는 시험용 인증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
- 11. 기타 한국전자인증 및 등록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

제19조 (재판권 및 준거법)

- ① 한국전자인증 인증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- ② 한국전자인증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한다.

제20조 (경과규정)

본 약관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 규정을 따르며, 종전의 약관 규정은 한국전자인증의 홈페이지(<https://www.crosscert.com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